

의안번호	제 57 호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9월 7일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봉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
----------	----

발의연월일 : 2022년 9월 7일

발 의 자 : 박봉순, 이상정, 김정일,
안지윤, 안치영, 조성태,
임병운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의료급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용어, 서식 등 불일치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급여법」에 따라 용어 변경 (안 제5조)
 - (현행) 대부 → (개정) 대지급(代支給), (현행) 대불금 → (개정) 대지급금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산에 관한 서류 제출 기한 변경 (안 제7조)
- 시행규칙은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11조 전부를 삭제 (안 제11조)
- 별지 서식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변경 (별지 제1, 2호)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2 - 호

다. 협 의 : 복지정책과

라. 비용추계 : 첨부제외 사유서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금의 재원)” 을 “(의료급여기금의 재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금의 재원” 을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 으로, “출연금” 을 “출연금,” 으로, “잉여금” 을 “잉여금,” 으로,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3조 중 “회계” 를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 로,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을 “「의료급여법」 에 따른” 으로, “의료급여사업보조금” 을 “의료급여사업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부” 를 “대지급(代支給)” 으로, “대불금” 을 “대지급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시·군의료
급여심의위원회의”를 “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한다.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
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가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
을 상환받을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회계연도마다 다음”으로,
“익년도 3월20일”을 “다음해 2월 말일”로, “전액”을 “그 전액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급여기금”을 “기금”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기관명

수신자 충청북도지사
(경유)

제 목 의료급여기금 교부신청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신청금액		지원	보조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대지급금, 보조 기기 급여비, 요양비 등	그 밖의 행정경비
		내역		
산출기초				

끝.

시장·군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행정기관명

수신자 충청북도지사

(경유)

제 목 의료급여기금 운용현황(분기)

1. 기금조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이월액	국고보조금	지방비 출연금	대지급금 상환금	부당이득금, 과징금등	기타 수입금
당분기							
누 계							

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분기 미지급액	예탁금	지급액	미지급액	위탁(심사및지급) 수수료	대지급금	행정경비등
당분기							
누 계							

※ 지급액란에는 심사결정금액,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지급액을 포함함.

3. 대지급금 운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대지급금	타시·도 전입금	타시·도 전출금	대지급금 상환금	결손처분	미상환금
당분기		()	()			
누 계		()	()			

※()내서는 도내 타시·군 전입금 기재. 끝.

시장·군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도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출연금, ----- -----잉여금, ----- -----그 밖의 ----- --.
제3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제5조(보조조건) 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제5조(보조조건) ① ----- ----- ----- -----

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생략)

3. 기금 운영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분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라고 9월 내지 3년 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토록 한다.

③ 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을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④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의 전부 또

-----.

1. -----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

2. (현행과 같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② -----
----- 대지급(代支給)-----
----- 대지급금-----
-----.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가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

-- 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

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제7조(보고등) ①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u>다음</u>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u>익년도 3월20일까지</u>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u>전액</u>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u>대불금</u>의 지출 및 상환조서 ② 시장·군수는 분기별로 <u>의료급여금</u>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등) ① ----- ----- <u>회계연도</u> <u>마다 다음</u> ----- <u>다음해 2월 말일</u>----- ----- ----- <u>그 전액을</u> ----- -----. 1. ~ 3. (현행과 같음) 4. <u>대지급금</u>----- ② ----- <u>기금</u>----- ----- ----- -----.
<u>제11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삭 제></u>

현행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기관명

우	주소	관	명
과	과장	담당주사	담당자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충청북도지사

발신: (시장·군수) 〇〇

참조:

계 목: 의료급여기금교부신청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신청금액	보조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대불금,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요양비 등)	지원 내역	기타행정경비
산출기초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충청북도지사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금 교부신청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신청금액	보조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대지급금, 보조기기급여비, 요양비 등)	지원 내역	그 밖의 행정경비
산출기초			

붙:

시장·군수

제일

가인자	직위(직급) 서명	김보자	직위(직급) 서명	권재민자	직위(직급) 서명
합조서					
시행	차리마-윤련번호(서명)	김수	차리마-윤련번호(김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가인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원 행

계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3.12.31>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담당주사	담당자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충청북도지사

발신 : (시장·군수) ()

참 조 :

계 목 : 의료급여기금 운용현황(분기)

1. 기금조성현황

구 분	계	이월액	국고보조금	지방비	대불	부당이득금	기타
당분기				출연금	상환금	과징금등	수입금
누 계							

(단위 : 천원)

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

구 분	전분기	예탁금	지급액	미지급액	위탁(심사및)	대불금	행정경비등
당분기		미지급액			지급)수수료		
누 계							

(단위 : 천원)

※ 지급액란에는 심사결정금액,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지급액을 포함함.

3. 대불금 운용현황

구 분	대불금	타사·도 전입금	타사·도 전출금	대불상환금	결손처분	미상환금
당분기		()	()			
누 계		()	()			

(단위 : 천원)

※ ()내서는 도내 타사·군 전입금 기재

[별지 제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충청북도지사

(경유)

계 목 의료급여기금 운용현황 분기)

1. 기금조성현황

구 분	계	이월액	국고보조금	지방비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기타
당분기				출연금	상환금	과징금등	수입금
누 계							

(단위 : 천원)

2.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

구 분	전분기	예탁금	지급액	미지급액	위탁(심사및지급)	대지급금	행정경비등
당분기		미지급액			수수료		
누 계							

(단위 : 천원)

※ 지급액란에는 심사결정금액,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지급액을 포함함.

3. 대지급금 운용현황

구 분	대지급금	타사·도 전입금	타사·도 전출금	대지급금	결손처분	미상환금
당분기		()	()	상환금		
누 계		()	()			

(단위 : 천원)

※ ()내서는 도내 타사·군 전입금 기재. 불.

시장·군수

직인

가인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반번호(시행)	접수
주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가인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관계법령 발췌

□ 의료급여법

제20조(급여비용의 대지급) ① 제10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급여비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지급(代支給)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 및 상환방법 등) ①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대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대지급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대지급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급여비용대지급승인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급여비용대지급승인서

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대지급승인서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비용의 대지급을 결정한 금액을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대지급을 승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제21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급여비용대지급금을 지체 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을 받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⑦ 급여비용의 대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

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

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 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일용잡급·국내여비·교육비·수용비·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⑨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 사 유

-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용어, 서식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의안에 따른 비용발생에 해당하지 않기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